



제307회 임시회

2012.03.07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2월 23일
- 회부일자 : 2012년 2월 24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,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거 유아교육진흥을 위해 ‘충청북도유아교육원’을 설치하고,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"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"을 설치함(안 제31조의7)
- 나.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함(안 제31조의8)
- 다.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 사무를 정함(안 제31조의9)
 - 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 - 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
 - 3.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해 ‘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’을 조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[법률 제10866호, 2011. 7. 21, 일부개정]

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□ 유아교육법[법률 제10913호, 2011. 7. 25, 일부개정]

제6조(유아교육진흥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<개정 2010.3.24>

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0.3.24>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제22698호, 2011. 3. 7, 일부개정]

제23조(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·교육규칙의 입법예고) ①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·교육규칙의 제정·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.<개정 2008.2.29>

[본조신설 2006.6.29]

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개원에 따른 기관 운영비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
3. 비용추계의 결과(재원조달방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2년도 본예산	2012년도 추경예산	합 계
합 계	0	645	645
자치단체	0	0	0
자체예산	0	645	645

4. 부대의견 : 없음

II. 비용추계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소요액	비 고
유아교육활성화	253	
교원연수	22	
교과교육연구지원	7	
장학활동지원	11	
유아교육투자확대	68	
주요업무계획추진	31	
교육홍보활동	2	
직속기관기본운영비	251	
합 계	645	